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6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6.

발 의 자:조지연·김형동·신성범

박덕흠 • 백종헌 • 이인선

최수진 • 고동진 • 우재준

임이자 · 강대식 · 김장겸

엄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('22.12)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 까지 육상, 육수 및 연안·해양 지역의 30%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·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'쿤밍-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'를 채택하였음.

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(2024~2028)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('23.12)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%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(자연공존지역)으로 보전 ·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, 잠재적 목록 구축, 등록방법 및 절차, 등록 이후 관리·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

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·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).

또한,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10조 등).

법률 제 호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. "보호지역"이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지역·지구등 중에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 보전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지구 등을 말한다.
- 12. "자연공존지역"이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 태계서비스 향상에 장기간 기여하는 지역으로서 제1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.

제7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자연공존지역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0조의2(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)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목록(이하 "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"이라 한다)을 구축할 수 있다.
 - 1. 보호지역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구별된 지역일 것

- 2. 관계 법령, 정책, 관리 계획 등 관리·관할체계가 갖추어진 지역일 것
- 3. 생물다양성·생태계서비스의 장기적·지속적인 보전·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일 것
- 4.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대상·항목·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3(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)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협의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·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에 대하여는 자연공존지역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.
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연공존지역의 시책 등에 따른 관리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 등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등록·해제 방법 및절차,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제10조의4(자연공존지역 보전·관리 지원)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, 관리인 등에게 자연 공존지역의 보전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
 - 2.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연 공존지역의 보전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 우
 -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, 관리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임을 확인하는 증서(이하 "자연공존지역증서"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
- ③ 환경부장관은 법인, 단체, 개인 등(이하 "민간"이라 한다)이 자연공 존지역의 등록·보전·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증진 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실적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의5(자연공존지역 협의체 구성·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 공존지역의 등록·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존지역 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. "보호지역"이란 「토지이용
	규제 기본법」 제5조 각 호에
	<u>규정된 지역·지구등 중에서</u>
	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
	보전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
	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지역・지구 등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12. "자연공존지역"이란 보호지
	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
	전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에
	장기간 기여하는 지역으로서
	제10조의3에 따라 등록된 지
	역을 말한다.
제7조(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	제7조(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
립) ① (생 략)	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	2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	
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자연공존지역의 보전・관리
	에 관한 사항

8. (생략) ③ ~ ⑦ (생략) <신 설>

-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 제10조의2(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)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른 자연공존지역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(이하 "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"이라 한다)을 구축할 수 있다.
 - 1. 보호지역이 아니며 지리적으 로 구별된 지역일 것
 - 2. 관계 법령, 정책, 관리 계획등 관리·관할체계가 갖추어진 지역일 것
 - 3. 생물다양성·생태계서비스의 장기적·지속적인 보전·향상 에 기여하는 지역일 것
 - 4.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

<신 설>

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 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대상·항목·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3(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등)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할수 있다. 이 경우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협의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

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 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자연공 존지역으로 등록·관리할 필요 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자

<u>연공존지역 등록을 해제할 수</u> <u>있다.</u>

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공존지역 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연공존지역의 시책 등 에 따른 관리 현황 및 생물다양 성 보전 성과 등을 점검하여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⑤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공존지역 등록·해제 방법 및 절차,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 제10조의4(자연공존지역 보전・

 관리 지원) ① 환경부장관 또는

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

<신 설>

공존지역의 토지 소유자, 관리 인 등에게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
- 2.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의 보전·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1 항에 따라 등록한 자연공존지역 의 토지 소유자, 관리인 등의 신 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임을 확인하는 증서 (이하 "자연공존지역증서"라 한 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법인, 단체, 개인 등(이하 "민간"이라 한다)이

<신 <u>설></u>

자연공존지역의 등록·보전· 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적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5(자연공존지역 협의체 구성・운영 등)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공존지역의 등록・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존지역 협 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